

김중연 선생님 「변리사 ONE 민사소송법 핵심노트」
초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 (2025-05-16)

P.2 1. 목적에 관한 다양한 논의 - 오탈자 수정

<기존>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i) 국가에 ... iv) 당사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 보장에 있다는 **절차보정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수정>

민사소송의 목적에 관하여 i) 국가에 ... iv) 당사자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절차 보장에 있다는 **절차보장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P.15 (1) 합의관할의 인정 여부 - 내용 수정

<기존>

㉠ (쟁점)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국제사법 제8조)와 관련하여 외국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 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는 유효하며,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수정>

㉠ (쟁점) 국제재판관할권의 합의(국제사법 제8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원을 배제하고** 외국 법원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합의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국내법원 외에 외국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는 유효하며, 이는 문제되지 않는다).

P.47 ① 쟁 점 - 오탈자 수정

<기존>

제35조 단서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만 재량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속적 관할합의의 재량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않기** 때문에, 제35조 ...

<수정>

제35조 단서는 전속관할의 경우에만 재량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속적 관할합의의 재량이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35조 ...

P.71 1) 법령상의 소송대리인 - 이탈자 수정

〈기존〉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변호사대리원칙에 따를 것이나, 그 외에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민법 제709조에의** 해석상 포괄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

〈수정〉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의 경우 변호사대리원칙에 따를 것이나, 그 외에 법률상의 소송대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통설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있는 경우 **민법 제709조의** 해석상 포괄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

P.83 3. 당사자적격 흠의 치유 방안 - 이탈자 수정

〈기존〉

(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승계의 방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적격자**가 당연승계하거나 **신격적자** 스스로 참가승계하거나 ...

〈수정〉

(나)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때에는 소송승계의 방식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적격자**가 당연승계하거나 **신적격자** 스스로 참가승계하거나 ...

P.129 판례박스 - 이탈자 수정

〈기존〉

핵심판례 대판 1990.7.13. 89다카20719, 20726

...

①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

〈수정〉

핵심판례 대판 1990.7.13. 89다카20719, 20726

...

①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경우는 사해소송의 결과로 제3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

P.165 3번째 줄 - 내용 수정

<기존>

(㉔) 특히,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뒤에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뜻을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01.9.28. 99다72521).

<수정>

(㉔) 특히, 신체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그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통상 법원의 신체감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뒤에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하면 소장에 기재된 일부청구액뿐만 아니라 그 손해배상채권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판 2001.9.28. 99다72521).

P.182 3번째 줄 - 오탈자 수정

<기존>

(㉔) (검토) 변론주의 하에서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는 엄격하게 준별되어야 하지만, i) 주요사실의 주장이 예상되고, ii) 상대방 방어권행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간접적 주장이 인정되면, 당사자는 해당 주요사실에 대해 주장책임을 다한 것이 되며, 법원은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수정>

(㉔) (검토) 변론주의 하에서는 사실자료와 증거자료는 엄격하게 준별되어야 하지만, i) 주요사실의 주장이 예상되고, ii) 상대방 방어권행사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간접적 주장이 인정되면, 당사자는 해당 주요사실에 대하여 주장책임을 다한 것이 되며, 법원은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P.183 2. 자백의 구속력 - 오탈자 수정

<기존>

당사자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법원이 사실인정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

<수정>

당사자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그대로 판결의 기초를 삼아야 한다.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

P.317 3.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의 효력에 관한 다툼 - 오탈자 수정

<기존>

재판상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

<수정>

재판상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

P.337 1) 실체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 - ① 쟁 점 - 오탈자 수정

<기존>

(나) 특히, i) 화해조항 자체가 **무급**여서 소송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

<수정>

(나) 특히, i) 화해조항 자체가 **무효**여서 소송법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

P.344 ⑤ 조정의 경우 - 오탈자 수정

<기존>

(가) 조정이란 **법관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

<수정>

(가) 조정이란 **법관이**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

P.355 (3) 판 례- 1) 원고가 항소한 경우 - 내용 수정

<기존>

원고의 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금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의 원고의 수개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대판 1994.12.23. 94다 44644). **이 경우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

<수정>

원고의 말소청구와 금원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말소청구 부분에 한하고 금원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전 원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의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대판 1994.12.23. 94다 44644). **마찬가지로 제1심 판결 중 불복하지 않은 원고 승소 부분은 항소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

P.369 (1) 판결이유에 대한 구속력 논의 - 문단 변경

〈기존〉

(가) 기판력은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된다 할 것이고,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소송물 논의로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관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나) 가령** 민법 제213조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사용대차로 볼 수 있으며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를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유에서 판단된다고 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후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전소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i) 기판력 확장이론과 ii) 신의칙 적용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수정〉

(가) 기판력은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결론에 대하여서만 발생된다 할 것이고,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소송물 논의로 기판력이 미치는 [선결관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나) 가령 민법 제213조에 근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에 기한 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판결에서 사용대차로 볼 수 있으며 임차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당사자를 구속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유에서 판단된다고 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후소에서 다시 다룰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전소확정판결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여기서 i) 기판력 확장 이론과 ii) 신의칙 적용이론이 나타나고 있다. 이하에서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P.387 3) 검 토- 오탈자 수정

〈기존〉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로 보는 바, 이를 고려해보면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안 경우에는(민법 제405조 1항에 따라 대위사실이 통지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 **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

〈수정〉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판례는 법정소송담당설로 보는 바, 이를 고려해보면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계속 사실을 안 경우에는(민법 제405조 1항에 따라 대위사실이 통지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 **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는 경우) ...

P.460 3) 소송수계 - 이탈자 수정

〈기존〉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i) (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수정〉

소송계속 중 당사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소송대리인이 없다면 소송절차는 중단되므로)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관계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

P.483 3) 사실관계 박스 - 내용 수정

〈기존〉

[사실관계] X교회가 담임목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무효에 대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담임목사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매도인은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수정〉

[사실관계] X교회가 담임목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명의신탁 무효에 대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담임목사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매도인은 예비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P.519 (2) 본소취하 후 소송관계 - 이탈자 수정

〈기존〉

㉠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된 후 소송관계에 관하여 i) 참가의 당초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3면소송관계는 끝났다는 전소송종료설이 있으나, ii) 판례는 본소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참가신청이 아닌 이상 일반 공동소송으로 잔존한다고 하여 공동소송잔존설의 입장이다(대판 2007.2.8. 2006다62188).

〈수정〉

㉠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된 후 소송관계에 관하여 i) 참가의 당초 목적이 상실되었으므로 3면소송관계는 끝났다는 전소송종료설이 있으나, ii) 판례는 본소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참가신청이 아닌 이상 일반 공동소송으로 잔존한다고 하여 공동소송잔존설의 입장이다(대판 2007.2.8. 2006다62188).

P.520 1. 의의와 성질 - 오탈자 수정

<기존>

(나) (표시정정과 구별) 판례는 당사자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양자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구별의 기준을 당사자의 확정을 통하여 당사자표시의 변경 전후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하였다.

<수정>

(나) (표시정정과 구별) 판례는 당사자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양자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별하면서, 구별의 기준을 당사자의 확정을 통하여 당사자표시의 변경 전후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일성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용된다고 하였다.

P.522 ② 학 설 - 오탈자 수정

<기존>

이에 대하여 i)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긍정설, ii) 경솔한 제소나 남소의 증가가 우려되고, 투망식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수정>

이에 대하여 i) 분쟁을 1회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긍정설, ii) 경솔한 제소나 남소의 증가가 우려되고, 투망식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P.590 1. 관할법원 - 오탈자 수정

<기존>

(가) 재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453조 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제451조 3항).

<수정>

(가) 재심의 소는 소송목적의 값이나 심급에 관계없이 취소대상인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453조 1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451조 3항).